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25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4. 13.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92,343,240원, 지방교육세 50,776,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25,38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7. 초정밀 반도체 부품 생산 및 임가공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 3. 15. [redacted] 주식회사와 사이에 [redacted]구 B 공장 용지 59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3. 잔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로 84,578,1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92,343,240원, 지방교육세 50,776,490원, 농어촌특별세 25,388,240원의 각 부과고지를 하였다가, 2016. 4. 14. 원고가 기존에 납부하였던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98,124,14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충당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25,388,240원의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부과착오를 이유로 2016. 4. 18. 농어촌특별세를 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거쳐 2016. 4. 19. 취득세 536,608,180원, 지방교육세 8,487,410원, 농어촌특별세 0원의 부과고지 및 농어촌특별세 24,531,030원의 부과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2016. 4. 19.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고지를 다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참조[2]). 따라서 피고가 2016. 4. 19.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을 전제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고지를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 또는 취소 후 재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

1)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재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감액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6, 을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착오부과를 이유로 직권취소한 다음 재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4. 11.자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2)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법리이나,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하여도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과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에 고지된 금액 전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계약 체결, 공사감독을 위한 현장소장 채용, 건축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대규모 초정밀 공장건물의 특성으로 인한 설계변경, 지질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하 매장물 철거 및 파일교체 작업, 건축공사 수급사의 일방적인 공사타절 등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승인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등이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공장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가 정한 취득세 추징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등 참조).

(2) 검토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 7~42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 지급일 이전에 설계계약 공모를 통하여 2011. 5. 11.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redacted]축(이하 '[redacted]축'이라 한다)과 사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579.09㎡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기간 1년, 대금 193,000,000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인 2012. 2.경부터 공사에 대비하여 현장소장으로 E을 고용하였고 착공 전부터 E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설계과정에서는 초고정밀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항온, 항습, 방진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클린룸의 제작뿐만 아니라, 여타 기계장비의 하중, 공정과정에서의 진동 등 다양한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했다. 원고는 [redacted]축과의 협의를 통하여 2년여 동안 총 16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2. 7. 4. 극동건축과 연면적 13,341.39㎡, 대금 165,033,000원으로 하는 설계변경계약서도 작성하였고, 2013. 2. 28. 설계변경에 관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비용과 시간 지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2013. 6. 18. 주식회사 홍[redacted](이하 '홍[redacted]'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물에 관하여 그 준공예정일을 2014. 3. 31.로 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6.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3. 7. 1. [redacted]축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2013. 7. 12.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redacted]주식회사가 사용하던 건물의 지하 부분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 발견되어 추가로 이에 관한 철거작업을 하여야 했다. 파일공사 과정에서는 당초 지질조사에서 측정되었던 19m보다 깊은 24m 지점에 풍화암지반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파일 길이와 수량, 설치 위치 등을 변경하여야 했다(파일공사에 8,300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지출되었다). 그리고 착공 이후에도 기계장비의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바닥 강도 보강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홍[redacted]에게 정상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홍[redacted]은 하수급업체들에게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업체들 중 일부가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결국 2014.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공사기간을 2014. 6. 30.까지 연장해 주었고,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홍[redacted]과의 계약해지를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지연을 우려하여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14. 7. 31.까지 재차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기성고를 초과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홍[redacted]은 계속하여 완공에 이르지 못하다가 2014. 10. 20. 원고에게 잔여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가 2014. 10. 31. 홍[redacted]과 작성한 타절정산 합의서에 의하면 홍[redacted]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은 836,055,265원,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777,600,000원인데, 홍[redacted]은 회생절차 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시 후 2015. 5. 26.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비용과 시간 지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홍[redacted]의 공사지연을 묵인하는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⑥ 원고는 직원인 C 과장을 통하여 2014. 11.경부터 홍[redacted]의 하수급업체들과 직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2015.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공장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기존에 주식회사 삼[redacted] 소유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월 임대료로 16,8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을 지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2015. 2.경까지 매달 임대료를 추가로 지출하여야 했다.

⑧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의 자금사정 등 내부적인 사정이 아니라 설계, 시공 등 과정에서 공장의 특성이나 공사현장의 예상치 못한 변수, 시공사인 홍림건설 측의 자금문제 등으로 인한 공사지체 등 원고에게 그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사정으로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곧바로 설계 등 준비행위에 착수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에도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설계 등 준비행위와 착공, 사용승인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관계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어 2012.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9

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4.1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